



1 한국교회총연합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회원 교단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창립하여, 12월 5일 제1회 총회를 갖고 활동 중인 본회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조 직

대표회장

전계현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전명구 감독(기감 감독회장)

최기학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이영훈 목사(기하성 여의도 총회장)

상임회장

유충국 목사(예장대신 총회장)
신상범 목사(기성 직전총회장)
조광표 목사(예장개혁 총회장)
박삼열 목사(예장합신 총회장)
김영희 목사(예장합동중앙 총회장)
신조광 목사(그교협 총회장)

안희묵 목사(기침 총회장)
김상석 목사(예장고신 총회장)
윤기순 목사(예성 총회장)
정동균 목사(기하성 총회장)
김영수 목사(나성 총회감독)

공동회장

허창범 목사(예장웨신 총회장)
안호상 목사(예장합동보수A 총회장)
정진성 목사(예장정동보수 총회장)
임춘수 목사(복음교회 총회장)
김영정 목사(예장합동보수 총회장)
김명희 목사(예장보수개혁 총회장)
손 덕 목사(예장예장 총회장)
이명구 목사(예감 감독)

고흥주 목사(예장보수 총회장)
권인기 목사(예장성경 총회장)
박남교 목사(예장합동북구 총회장)
유흥춘 목사(그교협교 총회장)
박광철 목사(예장진리 총회장)
진영석 목사(루터회 총회장)
김국경 목사(예장합동선목 총회장)

총 무 : 변창배 목사(예장통합, 대변인 겸임) 이경욱 목사(예장대신)

협동총무 : 최우식 목사(예장합동) 박영근 목사(기감) 이재형 목사(예장개혁) 정성엽 목사(예장합신)

서 기 : 김진호 목사(기성)

부 서 기 : 조원희 목사(기침)

회 계 : 구자우 목사(예장고신)

부 회 계 : 엄진용 목사(기하성 여의도)

감 사 : 장재덕 목사 이현범 장로

법인이사 : 전계현, 이승희, 최기학, 립형석, 이종승, 유충국, 전명구, 유관재, 이영훈, 엄진용, 신상범, 이윤구, 이상문, 정동균, 박삼열, 김영수, 김탁기

2. 회원교단

No	교 단	총회장	총무/ 사무 총장	교회수	총회 대의원 수	연회비	연락처	비 고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계현	최우식	11,937	24	100,000,000	T.559-5600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최기학	변창배	8,984	24	89,840,000	T.745-4640	
3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유충국	이경욱, 홍호수	7,139	24	71,390,000	T.584-6885	
4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박영근	6,721	24	67,210,000	T.399-4336	감독회장 행정실장
5	기독교한국침례회	안희묵	조원희	3,299	20	32,990,000	T.2683-6693	
6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 도총회)	이영훈	엄진용	3,261	20	32,610,000	T.782-4868	
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윤성원	김진호	2,813	14	28,130,000	T.3459-1014	
8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김상석	구자우	2,056	14	20,560,000	T.592-0434	
9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조광표	이재형	1,175	14	11,750,000	T.2238-0192	
10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윤기순	이강춘	1,087	14	10,870,000	T.1600-0695	
1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정동균	송시용	1,015	14	10,150,000	T.732-6830~6	
12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박삼열	정성엽	948	8	10,000,000	T.708-4458	상임회장 교단
1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앙총회	김영희	이승진	538	4	10,000,000	T.3216-3777	상임회장 교단
14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김영수	이관호	316	4	10,000,000	T.2643-8591	총회감독 상임회장 교단
15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신조광	강보식	310	4	10,000,000	T.3676-9995	상임회장 교단
16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허창범	신언창	213	2	2,130,000	T.835-2606	
17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	고홍주	김고현	211	2	2,110,000	T.031-418-8387	
18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A)	안호상	이영언	205	2	2,050,000	T.439-4830	
19	대한예수교장로회(성경)	권인기	김성실	204	2	2,040,000	T.909-3951	
20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보수)	정진성	노문호	202	2	2,020,000	T.722-3377	
2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복구)	박남교	소병기	200	2	2,000,000	T.822-8376	
22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임춘수	김한상	200	2	2,000,000	T.042-221-0774	
23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협의회	유흥춘	주성수	200	2	2,000,000	T.2600-2280~1	
24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김영정	홍찬혁	200	2	2,000,000	T.997-5004	
25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	박광철	김종인	200	2	2,000,000	T.2244-9201	
26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개혁)	김명희	김학범	200	2	2,000,000	T.764-3560~1	
27	기독교한국루터회	진영석	이병창	200	2	2,000,000	T.3789-7430	



No	교 단	총회장	총무/ 사무 총장	교회수	총회 대의원 수	연회비	연락처	비 고
28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손 덕	정창모	200	2	2,000,000	T.032-502-2651	
29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목)	김국경	이유은	200	2	2,000,000	T.433-5001	
30	예수교대한감리회	이명구	최영철	200	2	2,000,000	T.2637-4783	감독

3. 주요 사업 및 계획

1) 평창동계올림픽 한국교회 봉사단 운영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포함) 대회기간 중에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 임원단, 선수단, 관광객 및 경기 개최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전도대는 기독교감리회가 주관하여 2018년 2월 9일 ~ 2019년 3월 18일(27일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2) 3.1절 99주년 기념예배

본회가 주최하고, 평통연대가 주관하여 진행한 3.1절 99주년 기념예배는 종교교회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본회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3) 제1회 한국교회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

회원교단 목회자간의 교류와 친목을 위해 회원교단 목회자 축구대회를 5월 24일 하남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11개 교단에서 참가하여 친선을 도모했습니다.

4) 통일정책 심포지엄

본회 통일정책 입안과 통일 운동 확산을 위해, 6월 2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통일 심포지엄에는 회원 교단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한국교회가 진행한 남북협력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교단별 통일정책을 비교하여, 본회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통일정책을 입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 북한지역 종묘 지원 사업(장기 예정 사업) 등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정착 분위가 전개되는 가운데 본회에서는 평통연대와 여타의 관련 NGO들과 함께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종묘장 설치와 이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정책방향 및 조선그리스도연맹과의 협력 진척에 따라 속도를 조정하며 진행할 것입니다.

6) 사회정책 사업(진행 중)

본회 사회정책위원회는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현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젠다 선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마쳤고, 포럼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 MOU 체결한 기독교 전문 단체들의 활동 지원(진행 중)

본회는 현재 대한민국 안에 한국교회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NGO)들을 지원하여 한국교회 전반의 성과를 갖게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회가 직접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오는 업무중복과 재원 손실을 막고,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사역하도록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① 한국교회봉사단 ② 성시화운동본부 ③ 한국교회 공공정책협의회 ④ 평통연대 ⑤ 월드비전 ⑥ 기아대책기구 등과 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결실을 기대하며 본회는 회원 교단과 함께 지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8) 이단사이비에 대한 교단별 결의 내용 통계 작성 사업(예정)

본회는 한국교회로부터 이단 사이비로 지목된 교단이나 단체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단에 대한 규정이나 제재는 회원 교단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교단에 이단으로 지목하며 대응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회원교단들의 총의를 모아 함께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교단들이 이단사이비로 결의한 내용을 종합하고, 한국교회의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9)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예정)

2019년은 민족적 가사인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독교가 주도했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를 주관하여 한국교회와 정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그 민족정신을 고양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10) 본회 사단법인 설립 결의

본회는 2017년 1월 9일 출범하여, 8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12월 5일에는 제1회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노력하면서 법인설립을 유보해왔으나, 회원교단들의 법인설립 불가피 여론에 따라 총의를 모아 2018년 7월 20일 법인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법인은 장로교단 9월 총회 이전 완결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주요 일정

1) 제1회 총회

-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14:00
- 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

2) 제1-1차 임시총회(법인설립을위한)

- 일 시 : 2018년 7월 20일(금) 10:00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3) 제2회 총회

-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10:00
- 장 소 : 미정



5. 직 원

사무총장 : 신평식
사무국장 : 정찬수
직 원 : 이아소

6. 사무소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 912호
전화번호 : 02) 744-6200 팩스 : 02) 744-6202
이 메 일 : ucck6200@gmail.com
홈페이지 : ucck.org

7. 첨부 : 본회 정관 및 선거규정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정관

전문 (前文)

성 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1884년 4월 5일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한국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연합 정신에 따라 쉽 없이 하나 됨을 추구해 왔다. 1924년에 창립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를 필두로 하여 1989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출범시켰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2012년에는 한국교회연합을 창립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1월 9일 한국 교회 교단장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의 연합 단체를 만들고자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출범하였으며, 동년 8월 16일 <한국기독교연합>을 통합 창립하였고, 동년 12월 5일 <한국교회총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1회 총회를 개최한다.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국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갱신과 변혁의 토대가 되어,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와 한국 사회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친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는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는 한국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복음화와 교회의 성장을 우리의 기본 책무로 삼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각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나로 연합하여 기독교 신앙 선조들의 숭고한 유산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힘써 계승할 것이다. 우리는 연합하여 한국사회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을 함께 펼쳐갈 것이며, 한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정책을 세워서 이를 시행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신학을 상호 존중하며, 대화를 통하여 하나 됨을 추구하며 협력할 것이다. 각 교단의 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신앙공동체로 바로 서도록 서로 협력하며, 각 교단이 주어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교사역을 전개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것이다. 우리의 연합과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바른 신앙을 수호하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3.1운동을 통하여 수난을 무릅쓰며 민족을 섬기고 신사참배 거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한국 교회 신앙의 선조들과 순교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연합운동은 각각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단들이 참여하는 공교회의 연합이며, 공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나 개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한편, 현직 교단장들이 대표자로 참여하여 교단간의 화합을 증진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 한국 교회 연합사업의 성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연합운동을 열어가기 위한 것이다.

성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2017. 8. 16 한국기독교연합 창립총회에서 전문(前文) 제정

2017. 12. 5. 한국교회총연합 제1회 정기총회에서 개정

2018. 7. 20. 법인설립을 위한 총회에서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이하 본회라 한다. 약칭, 한교총)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UNITED CHRISTIAN CHURCHES OF KOREA (UCCK)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912호에 두며,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는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단 연합 단체로서, 각 회원 교단간의 연합운동과 공동의 목표인 복음의 전파와 변증에 있어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전개한다.

- ① 대한민국 기독교 교단들의 연합 사업
- ②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남북교회 협력 사업
- ③ 한국 교회와 국가, 사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연구 협력 사업
- ④ 한국 교회의 이단 및 사이비 집단에 대한 공동 대처
- 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의 교류 사업
- ⑥ 기타 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교회의 교단으로 한다.

- ① 회원이 되려면 가입신청을 하고 본회 회원실사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원 가입신청 서류 및 자격과 가입절차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권리)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 ① 회원은 총회대의원을 파송한다.
- ② 회원이 파송한 총회대의원은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 ③ 회원이 파송한 총회대의원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④ 회원은 상임회장단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① 본회의 정관과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의 준수
- ②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의 이행 및 준수
- ③ 회원 의무금 및 제반 부담금의 납부

제3장 총 회

제8조(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9조(구성) 총회는 회원 교단에서 파송하는 총회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대의원의 정수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정관의 개정
- ② 회원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

- ③ 대표회장의 선임
- ④ 임원, 감사, 법인이사의 선임
- ⑤ 신 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승인(임원회가 상정한 안건)
- ⑥ 본 회의 해산 의결
- ⑦ 이사회가 제출한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자금의 차입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인준
- ⑧ 회원 교단, 총대, 임원의 징계 의결

제11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간에 소집한다.
- ② 대표회장은 총회 개회 60일 전에 회원 교단에 통지하고 총회대의원 파송을 요청해야 한다.
- ③ 회원 교단은 개회 30일 전까지 총회 파송대의원 명단을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④ 서기는 개회 10일 전까지 회원 교단 총회대의원에게 총회소집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단, 총회 소집 통지서는 우편 또는 팩스나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 ⑤ 각 총회 파송 대의원은 서기가 접수하여 호명한 후에 회원권이 부여된다.
- ⑥ 임시총회는 상임회장회의의 결의 또는 감사나 이사회, 대의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대표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⑦ 임시총회 소집은 기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총회대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임시총회는 소집 시 정한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성수와 정족수)

- ① 총회는 총회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총회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 ③ 제10조 2,8항의 경우는 총회 대의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임원회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되는 본 회의 실행 기구이다.

제13조(조직과 구성)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를 조직 구성하며, 인원은 임원선임규정에 정한다.

- ① 대표회장
- ② 상임회장
- ③ 공동회장
- ④ 법인이사
- ⑤ 총무
- ⑥ 협동총무
- ⑦ 서기 1인
- ⑧ 부서기 1인
- ⑨ 회계 1인
- ⑩ 부회계 1인

제14조(임면 및 임기)

- ① 대표회장
 1. 총회에서 임원선임규정에 의하여 추대하여 선임한다.
 2. 임기는 1년이며, 단임으로 한다.



② 상임회장과 공동회장

1.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선임규정으로 정한다.
2.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최대 재임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③ 법인이사

1.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선출방법에 따른다.
2. 임기는 이사회 규정대로 한다.
3. 이사가 다른 직책과 중복되었을 경우 한 명으로 계수한다.

④ 그 외의 임원

1.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선임규정으로 정한다.
2.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이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회의에서 면직을 결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단, 면직결의 즉시 직무가 중지된다.

⑥ 선출된 임원(이사)은 주무관청에 즉시 통보한다.

제15조 (권한과 임무)

- ① 대표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장이 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회장: 대표회장을 보좌한다.
- ③ 공동회장: 상임회장을 보좌한다.
- ④ 법인이사: 법인의 설립정신대로 본회를 운영한다.
- ⑤ 총무: 본 회의 대내외의 업무를 총괄하고, 상임위원회의 사업과 운영을 조정한다.
- ⑥ 협동총무: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⑦ 서기: 회의록과 관계 문서의 기록과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 ⑧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⑨ 회계: 회계 관리와 예산·결산 및 증빙서류의 정비와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⑩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16조(직무)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임회장회의가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 ② 회원 교단이 상정한 안건이나, 총회 결의가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 ③ 상임회장회의가 제출한 운영세칙과 제 규정의 개정을 의결한다.
- ④ 지역협의회 설립을 승인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⑤ 명예회장과 원로, 고문,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 ⑥ 상임위원회와 회원교단, 상임회장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⑦ 상임회장회의에 위임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제17조(회장단 회의) 임원회는 본회의 대표회장회의와 상임회장회의를 두며, 그 인선과 구성방법은 시행세칙과 임원선임규정에 따르며,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회장회의

1. 공동 대표회장은 회의체를 구성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며, 기간을 정해 의장을 둔다.
2. 대표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협의에 따라 사안별로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할 수 있다.
3. 총회 이후 본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안을 의결하여 시행하며,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상임회장회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상임회장회의

1. 상임회장회의는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표회장 중 1인이 의장을 맡는다.
2. 회원 교단의 의무금을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임원인선위원을 선정한다.
4. 대표회장과 임원, 감사, 법인이사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5. 임원과 회원교단 및 총회대의원의 징계를 결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6. 본 회의 사업에 크게 기여하거나 명예를 빛낸 회원 교단 및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7. 회원실사위원회의 실사결과를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8. 정관, 운영세칙과 제 규정안을 발의하여 임원회에 상정한다.
9.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하여 임원회에 상정한다.
10.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을 심의하여 임원회에 상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구성과 선임과 임기) 이사회는 본 회의 재산관리와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 그 구성과 선임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사회는 법인이사(이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대표회장이 이사회의 장(이사장)이 된다. 단, 선임된 대표회장은 임기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③ 이사의 선임은 총회대의원 중에서 상임회장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 이사의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회기로 하되, 정기총회를 기산일로 한다.
- ⑤ 이사는 회원 교단을 안배하여 선임하며, 동일 교단에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회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후 3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사가 출석하지 못할 때는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개최 정족수에 포함한다.
- ⑥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한다.
 1.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이사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권한과 의무와 직무)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사는 본 회의 임원이 된다.
- ② 이사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소정의 이사 회비를 정기이사회 이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의 변경(취득, 처분, 자금의 차입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의결하여 집행한 후 보고할 수 있다.
- ④ 예결산에 대한 의견을 대표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⑤ 총회 혹은 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⑥ 대표이사(대표회장)가 부의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해임) 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단, 의결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이사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소속 교단이 본 회를 이탈하거나 의법 처벌을 받음
- ⑤ 1년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이사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함

제22조(보선) 이사의 결원으로 보선하여야 할 경우 상임회장회의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보선 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3조(감사) 본 이사회는 재산상황,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총회 대의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를 두며, 본 회의 감사를 겸한다.

제24조(감사의 선임과 임기)

- ① 감사는 2인으로 하되,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상임회장회의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1회기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제25조(감사의 권한과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사회에 참석하며, 언권을 갖는다.
- ② 총회의 모든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 ③ 감사 결과를 상임회장단 회의와 총회에 보고한다.
- ④ 감사는 부정과 불비한 사항이 심각하여 본회의 유지를 위해 긴급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주무 관청에 보고하거나, 이사회 혹은 총회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위원회

제26조(상임위원회) 본 회의 목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둔다.

- ① 상임위원회는 분야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둔다.
 - 1. 평화통일위원회
 - 2. 사회정책위원회
 - 3. 선교협력위원회
 - 4. 교육협력위원회
 - 5. 언론홍보위원회
 - 6. 교류협력위원회
 - 7. 바른신앙진흥위원회
 - 8. 예산심의위원회
 - 9. 회원실사위원회
- ② 위원장은 대표회장이 총회대의원 중에서 상임회장회의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③ 상임위원회 위원은 총회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최대 재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 정수는 배정대로 하되, 예산심의위원회와 회원실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 ⑥ 상임위원회 배정은 상임회장회의에서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27조(직무) 본 회의 상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평화통일위원회: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정책개발, 교류 협력 사업 및 북한교회대책 사업을 담

당한다.

- ② 사회정책위원회: 정부와 사회에 대한 정책개발, 인권,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연구하고 담당한다.
- ③ 선교협력위원회: 세계선교를 위한 공동의 정책을 개발하고, 선교협력과 국제 교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④ 교육협력위원회: 기독교교육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연구하고 교류 정책을 수립한다.
- ⑤ 언론홍보위원회: 한국 기독교회의 변증과 수호를 위한 논리 개발과 대책을 담당한다.
- ⑥ 교류협력위원회: 회원 교단간과 전문 단체간의 친선교류와 협력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과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 ⑦ 바른신앙진흥위원회: 한국교회를 반 기독교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⑧ 예산심의위원회: 본 회의 예산을 심의하여 상임회장단회의에 보고한다.
- ⑨ 회원실사위원회: 본 회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단에 대하여 바른신앙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사하여 상임회장단회의에 보고한다.

제28조(특별위원회) 본 회의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①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사항을 추진하거나 처리한다.
- ② 위원장은 대표회장이 총회대의원 중에서 상임회장단 회의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③ 위원은 총회대의원 중에서 배정한다.
-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선정하여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제29조(위원회의 임원) 위원회는 임원으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약간 명, 서기 1인, 회계 1인,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 ① 부위원장과 서기, 회계, 총무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직과 사무를 상임회장회의에 보고한다.
- ③ 위원장은 상임회장회의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자문위원 및 협의회

제30조(자문위원)

- ① 대표회장을 역임한 자들과 명예회장 및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들로 구성한다.
- ② 본 회의는 명예회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대표회장회의가 한국 교회와 본 회를 위하여 공을 세운 인사를 추천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 ③ 자문위원은 대표회장의 요청에 따라서 자문한다.
- ④ 총회에 참석하여 연권회원이 될 수 있다.

제31조 (협력단체)

본 회의는 교계의 각종 단체 중 본 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본 회의 명칭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 재정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① 협력단체는 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협약을 체결한다.
- ② 협력단체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활동하거나, 보고 의무 불이행, 비리의 발생 등으로 위상이 실추될 때에는 대표회장회의 결의로 협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를 공표한다.
- ③ 협력단체 운용에 대하여는 운영세칙에 정한다.

제32조(총무단회의) 본 회의 회원 교단의 총무/사무총장으로 총무단회의를 구성한다.



- ① 총무단회의는 본 회의 운영과 주요사업의 시행에 협력한다.
 - ② 총무단회의는 회장은 총무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총무단회의는 본 회 총무가 의장이 되며 회원교단 총무/사무총장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 제33조(지역협의회) 국내외 각 지역 연합회와의 연합과 협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재 정

제34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충당한다.

- ① 회원 교단의 의무금
- ② 교회·기업·기관 및 개인의 후원금
- ③ 기타

제35조(재산)

-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기본재산의 변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사무처

제37조(설치) 본 회의 법인사무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며, 상세한 운영방법은 사무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본회의 법인과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임면과 임무와 역할은 사무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정관 개정 및 해산

제39조(정관 개정)

- ① 정관개정안은 상임회장회의의 결의로 발의하며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 ② 정관개정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③ 정관 변경이 총회에서 결의되면, 대표회장은 이를 즉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40조(해산 및 잔여 재산의 귀속)

-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대표회장은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설립목적에 본 회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11장 보 칙

제41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본 회의 업무현황(사업실적 포함)과 결산서 및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정기총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원교단에게 보고한다.

제42조 (기관의 설치 및 협력) 본 회의 목적사업 시행과 추진을 위하여 기관을 설치하거나 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43조(운영세칙 및 임원인선규정)

- ① 본 회의 정관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과 제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운영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상임회장단 회의의 발의로 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2/3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44조(부칙)

- ① 본 정관과 운영세칙 및 제 규정과 총회 · 상임회장단 회의 · 임원회의 회의록은 대표회장 서기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사무처에 보관한다. 단, 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은 대표회장(대표이사)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사무처에 보관한다.
- ② 본 회의 모든 임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을 때는 그 회기에 한한다.
- ③ 본회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산일로 하며, 법인설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경우에 차기 정기총회 때까지를 1회기로 본다.

제45조(경과조치)

- ① 양 연합기관의 통합에 관한 합의사항과 본 정관은 통합창립총회에서 정관이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
- ② 양 연합기관의 창립은 통합 후 창립이므로 양 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 ③ 통합창립총회가 회집한 이후 2017년 12월 첫째 주간에 회집하는 제1회 총회까지 양 단체의 대표회장인 김선규 목사, 이성희 목사, 전명구 감독, 정서영 목사(가나다 순)의 4인이 공동으로 대표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4인의 공동대표회장이 임시 사무총장을 임명하여 제1회 정기총회의 준비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 ④ 제43조(경과조치) 1항에도 불구하고 양 연합기관의 통합창립총회 이전에 선임되어 주무관청에 등재된 이사의 임기는 보장하며, 제23조(이사회)의 직무) 4,5,6,7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가 완전 개편되고 주무관청에 등재 완료될 때까지 그 적용을 유보한다.
- ⑤ 양 연합기관의 통합창립과 관련하여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상임회장단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 ⑥ 본 한국교회총연합의 창립으로 경과조치의 효력은 종료된다.

제46조(설립자)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 명	주 소	서 명
전계현		
최기학		
전명구		
이영훈		
변창배		
이경욱		
신평식		

- 2012. 03. 29 한국교회연합 창립총회에서 제정
- 2017. 08. 16 한국기독교연합 통합창립총회에서 전면 개정
- 2017. 12. 5. 한국교회총연합 제1회 총회에서 개정
- 2018. 7. 20. 사단법인 설립총회에서 전면 개정